

1. 防災關聯法規 改正

가. 建築法的 改正

法律 제 3558 號로 改正된 建築法이 1982年 4月 3日 公布되어 防災研究部에서는 改正 法律의 事本을 본지부에 送付한바 있으며 그 중 安全點檢 實務와 밀접한 關聯이 있는 部分을 발췌하여 轉載한다. 특히 建築法 제 2조 제 3호의 「特殊建築物」의 用語에 대한 定義가 삭제되었으나 同法 施行令에서 「特殊建築物」이란 用語가 빈번히 引用되고 있으므로 建築法 施行令의 改正, 公布時 까지 點檢과 關聯하여 特殊建築物이란 用語를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을듯 하다.

改正建築法 新·舊 對比表

조 항	舊	新
제 2조 제 7호	“主要構造部”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重要部分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主階段,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한다.	“主要構造部”라 함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間壁, 셋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遮陽, 屋外階段,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建築物의 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部分은 제외한다.
제 23조 의 2	(特殊建築物等の 內裝) 제 2조 제 3호의 規定에 의한 特殊建築物(火葬場, 屠殺場, 塵埃 및 汚物處理場은 제외한다) 및 5층 이상인 건축물의 屋內 部分의 內裝은 大統領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行하여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建築物의 內裝) 5층이상인 建築物, 醫療施設, 宿泊施設, 販賣施設, 觀覽集會施設, 慰樂施設, 共同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屋內部分의 內裝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내무부 고시 제 4호)

現 消防法 施行令 제 26조의 規程에 의하여 國家檢定을 받아야 할 消防用機械器具중 泡沫消火器와 消火藥劑를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는 除外하게 되어 있으나 할로젠化合物에 의한 消火藥劑의 開發이 눈부시게 進歩하고 있으며 그 消火性能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할로젠化合物을 藥劑로 한 消火器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에 內務部에서는 할로젠化合物을 藥劑로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에 대한 製造 및 性能에 대한 最小限의 基準을 製定한 것으로 思料된다.

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은 全文 6條(既送付한 規程사본 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조에서 「간